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22일, 권향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 2.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권향엽의원)

현행법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수행하여야 할 관리·조정 기능 역시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4항, 제21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자율성과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임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령이 아닌 정관이나 중장기 기본계획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중장기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

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제시된 연구회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6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어 정부 차원의 주요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기구임. 이러한 체계를 고려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인 연구회가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그대로 심의하는 것은 심의 기구의 성격이나 절차적 형식 측면에서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문회의의 현황과 체계 등을 고려하면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연구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최형두위원)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